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2016년 8월호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M&A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울회계법인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기업의 M&A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8월호

- M&A의 방법: (1) 합병
- M&A의 방법: (2) 분할

9월호

- M&A의 방법: (3) 자산및 영업양수도
- M&A의 방법: (4) 주식교환및이전

세무정보

- 2016 세법 개정안 - 기획재정부 (2016.07.28)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외국환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M&A의 방법: (1) 합병

■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함. 상법상 간소화 정도에 따른 일반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과 대금지급방식에 따른 삼각합병으로 구분

일반합병

1. 일반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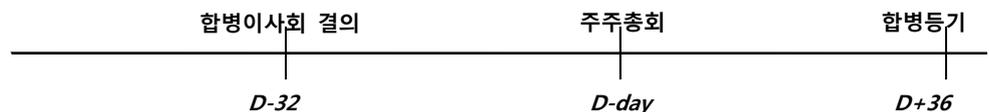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합병 방법

합병주요절차

(1) 주요절차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상장법인과 합병은 비상장법인간 합병절차에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평가, 주요 사항보고서제출, 상장법인의 공시 및 신고, 합병신주의 상장 절차 등이 추가됨.

상장사가 합병대상법인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합병을 진행해야 하므로 동사항의 사전 검토가 필요.



1. 사전준비

- 합병관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2. 합병승인 주주총회

-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총2주전 공고 및 통지)
-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공시 (주총2주전~합병일부터 6개월)
-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3. 합병등기

-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 시작 (주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 주식의 병합 및 구주권 제출 공고 (주총일부터 20일 내 청구)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주총일부터 20일 이내)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공고기간 1월 이상)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공고기간 1월 이상)
- 합병기일
- 합병보고주주총회 같음 이사회 결의 (합병보고주주총회 대체)
- 이사회결의 공고(정관상 공고 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 게재)
- 합병등기(본점: 공고일부터 2주내, 지점: 공고일부터 3주 내)

주요 고려사항
(2) 주요 고려사항
① 합병가액 산정

- 상장법인간의 합병: 합병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증가, 1주일 가중평균 증가 및 최근일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30%(계열사 간 합병은 10%)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상장법인간의 합병 준용. 단, 산출한 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본질가치), 상대가치 가액을 비교하여 공시

② 주식매수선택권

- 합병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합병이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정)하거나, 청구권 행사주주 및 소요자금을 예측하여 매수 가능한 수준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함

③ 비상장대법인 및 우회상장 요건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이 자산, 자본금,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 클 경우 비상장 대법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경영권이 변동될 경우에는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세무상 적격 합병

- 비적격 합병 시 세무비용이 발생하므로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등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소규모합병
2. 소규모합병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같은 복잡한 절차 및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자금부담이 없어 신속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방법

소규모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 가능. 단,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제외.

2015년 개정상법은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뿐만 아니라 이전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규모 합병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재산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

간이합병
3. 간이합병

소멸하는 회사의 전체 주주가 동의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소멸하는 회사는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 가능. 간이합병은 절차가 간단하나 반대주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됨.

삼각합병
4. 삼각합병

삼각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신주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

소멸회사의 부채는 합병 후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승계하므로 모회사는 한정적 책임을 지며,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 상법상 의무는 회피가능. 2015년 개정상법은 존속하는 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M&A의 방법: (2) 분할
분할
■ 분할
1. 분할

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분할이라 함. 거래의 실질과 형태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단순분할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소유주체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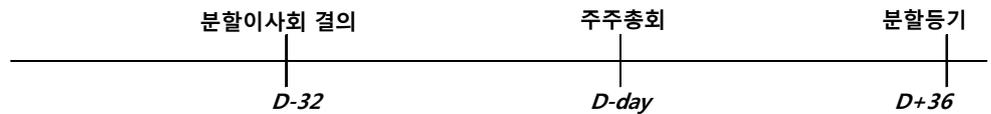
(1) 단순분할(인적 및 물적)

구분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신설회사	분할회사 주주	분할회사
자산이전	장부가액	공정가액
자산평가	불필요	필요
자본감소	감자절차 발생	감자절차 없음
구주권제출	필요	불필요
배당	감자차손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변동	영향을 받지 않음
재상장	지분분산절차 불필요	재상장불가(일정요건 충족시 신규상장 가능)
주식매수	상장법인의 경우 신설법인이 재상장	불필요
등기형태	분할회사 : 자본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 : 설립등기	분할회사 : 분할등기 분할신설회사 : 설립등기

분할 주요절차

(2) 주요 절차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 물적분할은 인적분할 절차에 이전되는 부문의 자산·부채 평가절차가 추가되고, 구주권 제출절차는 생략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분할신고서 제출, 법정공시 및 신고, 분할종료보고서 제출, 분할회사 변경상장,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절차 등이 추가. 한편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며 인적분할시 상장사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이 이루어져야 함.


1. 사전준비

- 분할대상 사업부문(자산, 부채 등) 확정
- 법률, 회계, 조세문제 등 검토
- 분할일정, 절차, 분할계획서 확정
- 분할회사의 정관변경사항 확정
- 분할신설회사 정관, 임원 등 확정

2. 분할승인 주주총회

- 분할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 주총소집 이사회결의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2주전 공고)
-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 주총소집 공고 및 통지 (분할계획의 요령 기재)
-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주총 2주전~분할등기 후 6개월)
-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주총특별결의)

3. 분할등기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 주식의 병합 및 구주권 제출 공고 (주총일부터 20일 내 청구)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 (공고기간 1월 이상)
-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공고기간 1월 이상)
- 분할기일
- 분할보고주주총회 같은 이사회 결의 (이사회결의로 분할보고주총 대체)
- 이사회결의 공고(분할보고총회,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같음)
- 분할등기(본점: 공고일부터 2주내, 지점: 공고일부터 3주 내)

주요 고려사항

(3) 주요 고려사항

-분할비율 결정

① 분할 대상 자산·부채 확정(분할비율 결정)

재무상태표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내용
분할기준일 재무상태표 추정	사업 및 투자계획 등 반영
직접 귀속 및 공통자산·부채 배부	분할 TAX 적격요건 충족
	증자계획 및 경영효율성 고려
현금 및 차입금 배부	재무구조 및 자금수지 등 고려
분할 재무상태표 확정	신설법인 자본금 결정

분할 사업 부문 관련 자산·부채는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승계하고 공통 자산·부채는 신설법인의 계속기업가능성 및 귀속(Tax 적격분할 요건, 자금수지계획 등)에 따라 배부.

분할비율은 회사 전체 자산·부채 중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귀속된 자산·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신설법인에 귀속될 자본금과 주식수를 결정하는 기준임. 순자산기준과 기업가치기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순자산 기준으로 자본금과 주식수를 결정함.

주요 고려사항
- 분할관련 세무 검토
② 분할관련 세무 검토
가. 분할 주체별 세무 이슈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세액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내용	적격분할 요건	
		충족	미충족
존속	순자산양도손익 법인세	과세이연	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사업의 포괄적
	증권거래세	면제	과세
	분할매수차손익	과세이연	과세(5년간 균등월할환입)
신설	유보사항의 승계	승계	일부 승계(퇴직급여총당금, 대손총당금 등)
	취득세	면제(85%)(*)	과세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주주	의제배당 법인세 및 소득세	미발생(신주를 시가와 취득가로 평가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과세

(*)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라, 취득세는 개별 조항에서 전액 면제하더라도 면제 세액의 15%는 최소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액 면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감면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함.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적격분할 요건
나. 적격분할 요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 요건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내용	세부사항
사업목적분할	사업영위기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독립된 사업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포괄적 승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단독출자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할 것
지분의 연속성	주식교부비율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일 것
	주식배정	그 주식을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할 것
	주식보유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사업계속성	사업영위기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사후관리 요건
다. 사후관리 요건

과세혜택을 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후관리 요건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일정기간 ^{*1} 동안 분할신설 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유지 ^{*2} [판단기준_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4] 1.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1/2이상 처분 또는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예외) 법인의 파산에 따른 처분, 적격합병(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른 사업폐지,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의 허가를 받아 승계자산 처분	일정기간 ^{*1} 동안 법정주주는 분할 신주를 보유 (예외) 교부받은 주식의 1/2 미만 처분 (지배주주간의 처분 제외) 사망, 파산에 따른 처분 적격합병(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른 처분,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

요건 위배시
[분할신설법인] 1. 자산조정계정 총합계액의 잔액을 일시 익금산입, 2. 분할매수 차손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익금(손금)산입 3.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추정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2) 승계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주요 고려사항
**- 인적분할시 재상
장 요건**
③ 상법법인 인적분할시 재상장요건 충족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신설법인이 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재상장 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인적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강제화하는 법안 시행 중.

또한 상장법인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재상장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장주선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상장주선인을 반드시 선임하고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재상장 신청을 해야 함.

분할합병
2. 분할합병

분할합병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것이며 분할회사 측면에서는 기업분할이지만, 분할합병의 상대방 측면에서는 합병임.

분할합병과 합병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분할합병	합병
대상	주식회사만 가능	모두 가능
사업부문승계	일부 사업부문 승계 가능	회사 전체(모든 사업부문) 승계
대가의 수취자	분할회사의 주주(인적) 또는 분할회사(물적)	피합병회사의 주주
자산·부채 승계	특정사업부문에 속한 자산·부채만 승계 가능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승계
합병 또는 분할합병회사의 책임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및 부외부채에 대하여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 가능	피합병회사의 모든 채무 및 부외부채에 대하여 책임 부담
대상회사의 소멸	분할회사는 존속 또는 소멸 가능	피합병회사는 무조건 소멸
주총	특별결의, 소규모 및 간의의 경우 이사회 같음	좌동

삼각분할합병
3. 삼각분할합병

2015년 개정상법은 삼각분할합병을 도입하여, 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를 위하여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 후에도 모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6 세법 개정안 - 기획재정부 (2016.07.28)

■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1) 신성장산업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 확대

(현행)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2상

(개정) 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희귀질환은 국외 수행도 적용)

○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투자금액의 90% → 100%) 확대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투자금액의 90% 한도)

** (현행) 고도기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기술사용 비율만큼 감면)

(개정) 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

○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2)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 신규 적용,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

* 내국인이 투자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마이스터고교 등 졸업자	2,000만원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인 자	1,500만원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원	1,500만원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를 2017.12.31일까지 연장

3) 역외세원 확보

-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구 분	내 용
-----	-----

제출대상	-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
작성내용	- 다국적기업의 당해연도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종업원 수, 자산현황 등), 세금납부 현황 등
제출기한	- 모회사 사업연도말 기준 12개월 이내

* 이전가격 문서화 3종 보고서(OECD 권고) 중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2015년 기도입

20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해 2017년말까지 제출, 20118년부터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

4)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현재는 무기한 의무 보유)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 확대
 (현행)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
 (개정)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
- 합병 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축소
-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 분할시 과세이연 되는 주식의 범위 -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추 가>	-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업(해외 자회사) 주식
---	---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확대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동일사업 → (개정) 세분류상 동일사업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해당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청탁 금지
1) 부정청탁 금지

제 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 청탁 시 처벌>

본인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본인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본인이 제 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본인에 대해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제 3자가 본인을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제 3자에 대해 2천 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인 제3자가 본인을 위하여 공직자 등에 게 부정청탁	제 3자인 공직자에 대해 3천 만원 이하 과태 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 직자 등	공직자 등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2) 부정청탁 금지 유형

아래의 각 호를 포함 총 15개 호를 통해 부정청탁 행위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

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부정청탁금지 예외

아래의 각 호를 포함 총 7개 호를 통해 부정청탁 행위의 예외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금품수수 금지 대상 및 처벌

동일인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직무관련성, 대가성 불문)	3년 이하 징역 또는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1회에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	료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금품수수 금지 예외

아래의 각 호를 포함 총 8개 호를 통해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현행법 VS 부정청탁금지법

관련법률	형법, 특가법, 특경법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무원, 정부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금융기관 임직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임직원,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언론인, 교직원 등 확대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수만 처벌	직무관련성, 대가성 불문하고 금품수수 처벌
부정청탁 처벌여부	청탁한 퇴직공직자는 형사처벌, 청탁 받고 수행한 공직자는 징계,	청탁한 자는 과태료, 청탁 받고 미신고한 공직자는 징계, 수행한

	대가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공직자는 형사처벌
벌칙	형사처벌(수뢰액에 따라 최대 무 기징역)	100원 초과 : 형사처벌 100원 이하 : 과태료
양벌규정	없음	있음

외국환거래법
외국환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지난 6월 14일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환거래의 편의성 제고

- ①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해외송금시 은행 등의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본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이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②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합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은행에 사후보고 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③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합니다.

■ 비금융회사 외국환업무 허용: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외화 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 할 경우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 >

	기존	향후
금융회사등	설립근거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16.3월 개정)	좌동
비금융회사	환전업	환전업, 외화이체업, +α(시행령에서 추가하는 업무)

■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대응수단 마련

-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 ②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율의 일시적인 하향 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 ③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조정합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

**기업활력법
시행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8.13.부터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법 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재편(구조변경과 사업혁신 동시 요(要)) 정의(제2조)
 -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 다양한 구조변경 행위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을 규정
- 2) 과잉공급 정의(제3조)
 -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하고, 세부 판단기준은 실시지침(6.2일 초안 공개)에서 규정
-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5조·제6조)
 -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예정(산업부 차관,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 (민간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소와 회계사·변호사 등 경력(10년 이상), 기타 유관 경력(15년 이상)이 있는 자로 자격 규정
 - (회의소집·의결요건) 공동위원장이 회의소집 및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4) 사업재편계획 검토·심의 기간(제11조)
 -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심의를 위해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규정
- 5) 사업재편계획 승인거부 및 취소 사유(제11조, 제15조)

- (승인거부)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출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익 제공 등)의 경우 등에는 승인을 거부하도록 규정
 - (취소) 취소사유 명확화 차원에서 승인기업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
- 6) 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지원(제18조·제19조·제20조)
- 지원 가능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장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 반영

**기업 결함
신고 요령**
기업결함 신고요령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함 신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기업결함 신고요령이 개정되어, 신고 절차 및 신고 양식 등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 면제 또는 완화

기업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큰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업결함 유형을 불문하고 신고회사가 자사 및 상대회사의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개정안을 통하여 간이 신고 대상인 기업결함과 혼합형 기업결함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였습니다.

■ 국내 상장회사의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제출 면제

또한,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였습니다.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면제하는 대신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달리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만 기재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